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명확화〉

■ 이재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38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 3 |
| 2. 검토의견 .....          | 4 |

##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이재명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4. 8. 21.
3. 회부일 : 2024. 8. 2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는 등 중앙정부에만 근로감독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하여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하는 데에 여러가지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따라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이들 지방정부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명위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Ⅲ. 검토의견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대표발의, 제2203039호)」의결에 따른 지방근로감독관 도입을 전제로,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련 범죄”에서 “소속 관서의 관할 구역 내 그의 업무 범위에서 발생하는 관련 범죄”로 변경하는 내용임(안 제6조의2제1항).

| 현행                                                                                                  | 개정안                                                                                                      |
|-----------------------------------------------------------------------------------------------------|----------------------------------------------------------------------------------------------------------|
|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u>그의 관할 구역에서</u>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br>-----<br>--- <u>소속 관서의 관할 구역 내 그의 업무 범위에서</u> -----<br>-----<br>-----<br>-----. |
| 1. ~ 19. (생략)                                                                                       | 1. ~ 19. (현행과 같음)                                                                                        |
| ② . ③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근로기준법<sup>1)</sup>」은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심문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근로감독관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를 제외한 해당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1)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관련 규정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현행법<sup>2)</sup>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규정과 연계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높아지는 노동자의 권리 의식 및 내용의 복잡성 등으로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하는데 한계가 있는바,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받아

2)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sup>3)</sup>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대표발의, 제2203039호)<sup>4)</sup>」(이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근로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근로감독관으로 구분되나,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039호)」 제안이유

4)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u>근로감독관</u> 을 둔다.<br><br><신 설><br><br><신 설><br><br>② (생 략)<br><br>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u>장에게</u> 위임할 수 있다. | 제101조(감독 기관) ① ----- <u>근로감독관</u> (이하 “ <u>중앙근로감독관</u> ”이라 한다)-----.<br><br>② 제106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u>근로감독관</u> (이하 “ <u>지방근로감독관</u>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br><br>③ 지방근로감독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한다.<br><br>④ (현행 제2항과 같음)<br><br>제106조(권한의 위임) -----<br>----- <u>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u> -----. |

○ 현행 「근로기준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을 “근로감독관”으로 통합하여 규정<sup>5)</sup>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근로감독관과 지방근로감독관의 구분 없이 모두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고 해석될 수 있음.

□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지방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수사관할을 “관할 구역”에서 “소속 관서 관할 구역”으로 변경하고, 직무범위를 “그의 업무범위 내”에서 발생한 관련 범죄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근로감독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현행 근로감독관<sup>6)</sup>의 경우 「근로감독관규정<sup>7)</sup>」에 따라 고용노동부

5)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사법경찰권 행사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02조부터 제105조는 모두 “근로감독관”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해당 조항은 개정대상이 아니므로 현행법과 동일하게 “근로감독관”으로 통합하여 규정되는 구조임. 또한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사법경찰권 부여대상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6)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근로감독관”을 말함

7) 제2조(당연직 근로감독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의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소속 공무원

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10조제3항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평등에 관한 업무

나. 직제 제10조제3항제32호부터 제3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

다. 직제 제11조제3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

라. 직제 제11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노사분규에 관한 업무

마. 직제 제11조제3항제13호,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제22호 및 제23호에 따른 근로기준에 관한 업무

바. 직제 제11조제3항제14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4호에 따른 임금에 관한 업무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고용·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공무원이  
 자동적으로 임명되고 해당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할 등은 「고용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sup>8)</sup>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 
- 사. 직제 제11조제3항제32호부터 제3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  
 아. 직제 제11조제3항제37호부터 제3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안전에 관한 업무
2. 지방고용노동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3.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의 장과 그에 소속된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 제3조(임명직 근로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만으로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아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보조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에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한시적인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외에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근로감독관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8) 제2조(소속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 제19조(직무) 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접수·발송,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7.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8.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10. 노사분규의 예방과 수습, 노사협력의 증진과 그 밖에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 10의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11. 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 제20조(명칭 등) 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지청) ① 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② ~ ③ (생략)  
 ④ 지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출장소) 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수사관할과 직무범위를 현행 법과 같이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련 범죄”로 규정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의 수사범위는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방근로감독관의 경우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이 정해지고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특성상 수사 가능한 업무범위가 불명확할 소지가 있는바,

○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근로감독관의 경우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그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에서 발생하는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근로기준법」, 「근로감독관규정」 및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의 “3급부터 7급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명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 공무원”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사법경찰관”로서 근로감독관의 수사업무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sup>9)</sup>을 참고할 필요가

---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있어 보임.

-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경우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대표발의, 제3039호)의 의결을 전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을 두게 되는 경우 ① ILO 근로감독 협약<sup>10)</sup> 위반, ② 근로자 보호 미흡, 노·사간 혼란·갈등 문제<sup>11)</sup>, ③ 전문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sup>12)</sup>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70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감독관규정」

제5조(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8급 또는 9급 공무원 중 근무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추천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은 후 근로감독관의 수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10) ILO 근로감독 협약은 근로감독을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두도록 규정
- 11)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근로자 보호상 격차 발생 및 지역별로 다른 법 적용 및 처분으로 인해 노사 간 불필요한 혼란 및 갈등 발생
- 12) 근로감독 업무는 19개 노동관계법을 해석하고 적용·집행하는 업무로 법리적·기술적 전문성을 위해 근로감독관 개인과 조직에서 장시간의 경험과 지식축적이 필요

## [참고자료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 현행법상 사법경찰은 크게 ①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②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 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취지에서 1956년 도입되었고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2023. 12. 31. 기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14,500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6,000명에 이르고 있음.

## [참고자료 2] 기관별·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2023.12.31.기준)

### 1.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 연번 | 기관명                        | 업무분야                          | 지명인원  |
|----|----------------------------|-------------------------------|-------|
| 1  | 기획재정부(관세청)                 | 관세법 등 위반 범죄                   | 501   |
| 2  | 기획재정부(국세청 <sup>13)</sup> ) | 조세 관련 범죄                      | 5,273 |
| 3  | 법무부(교소도등)                  | 교도소, 구치소 등 내에서<br>발생한 범죄      | 1,358 |
| 4  | 국방부(기무사등)                  | 군용물, 군사기밀보호법, 병역법<br>등 위반 범죄  | 312   |
| 5  | 병무청                        | 병역법 위반 범죄                     | 40    |
| 6  | 소방청                        | 소방기본법 등 위반 범죄                 | 2,157 |
| 7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br>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 9     |
| 8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 26    |
| 9  | 농림축산식품부<b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 1,128 |
| 10 | 농림축산식품부<br>(국립종자원)         | 종자사업법 위반 범죄                   | 38    |
| 11 | 농림축산식품부<br>(농림축산검역본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방역법<br>위반 범죄      | 208   |
| 12 | 농림축산식품부<br>(농촌진흥청)         |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br>범죄        | -     |
| 13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 산림, 임산물, 수렵 관련 범죄             | 179   |
| 14 | 산업통상자원부<br>(광산안전사무소)       | 광산보안법위반범죄                     | 14    |
| 15 |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 부정경쟁행위, 상표법 등 위반<br>범죄        | 45    |
| 16 |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              |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                   | 4     |
| 17 | 환경부(국립공원공단)                | 환경 관련 위반 범죄<br>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  | 600   |
| 18 | 환경부(환경청)                   | 환경 관련 위반 범죄                   | 69    |
| 19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 1,057 |
| 20 | 국토교통부<br>(지방국토관리청)         | 도로법 등 위반 범죄                   | 60    |

| 연번  | 기관명                    | 업무분야                     | 지명인원   |
|-----|------------------------|--------------------------|--------|
| 21  | 국토교통부<br>(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br>발생하는 범죄 | 457    |
| 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br>(중앙전파관리소) | 전파법 등 위반 범죄              | 141    |
| 23  | 해양수산부<br>(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br>위반 범죄 | 165    |
| 24  |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 어업자원보호법 위반 범죄            | 503    |
| 25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범죄           | 26     |
| 26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범죄          | 18     |
| 27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약사, 보건범죄 위반 범죄       | 36     |
| 28  |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등<br>위반 범죄 | 12     |
| 29  | 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설비<br>위반 범죄 | 22     |
| 30  | 대통령경호처                 | 경호업무 수행 관련 범죄            | 28     |
| 31  | 행정안전부                  | 안전분야 관련 범죄               | 3      |
| 32  | 환경부                    | 환경 관련 위반 범죄              | 13     |
| 33  | 국토교통부                  | 교통 등 불법행위 조사, 단속         | 4      |
| 34  | 금융감독원                  | 자본시장 범죄                  | 25     |
| 35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            | 5      |
| 합 계 |                        |                          | 14,536 |

자료제공: 법무부 형사기획과

- 13) 기획재정부(국세청) :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조사 공무원’으로서 조세범칙 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혐의자 등에 대해 심문·압수·수색·범칙 처분을 하는 등 사실상 특사경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명절차도 법무부 예규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관례적으로 특사경 인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 2.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 연번  | 기관명     | 업무분야             | 지명인원  |
|-----|---------|------------------|-------|
| 1   | 서울특별시   | 식품, 공중위생 등 관련 범죄 | 400   |
| 2   | 부산광역시   | 〃                | 334   |
| 3   | 인천광역시   | 〃                | 371   |
| 4   | 대구광역시   | 〃                | 203   |
| 5   | 대전광역시   | 〃                | 172   |
| 6   | 광주광역시   | 〃                | 166   |
| 7   | 울산광역시   | 〃                | 235   |
| 8   | 세종특별자치시 | 〃                | 45    |
| 9   | 경기도     | 〃                | 730   |
| 10  | 경상남도    | 〃                | 404   |
| 11  | 경상북도    | 〃                | 595   |
| 12  | 충청남도    | 〃                | 583   |
| 13  | 충청북도    | 〃                | 528   |
| 14  | 전라남도    | 〃                | 465   |
| 15  | 전라북도    | 〃                | 273   |
| 16  | 강원특별자치도 | 〃                | 531   |
| 17  | 제주특별자치도 | 〃                | 33    |
| 합 계 |         |                  | 6,068 |

자료제공: 법무부 형사기획과